

2022.04.22.

근로자의 날(5월 1일) 노무관리 유의사항

공인노무사 김재언

1. 2022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일요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임
-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임
-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올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상황임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하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각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므로(근로기준과-2571, 2005.05.11),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자의 날로 처리**

2.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방안

(1) 근로제공시 임금계산

-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월급제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지급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0% 지급

*일급제 및 시급제는 유급휴일 100%+휴일근로수당 150%= 250%로 계산

**근로자의 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

(2) 휴일부여시 임금계산

- 일요일이 무급휴무일(또는 비번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인지 시급제(또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짐

월급제근로자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계산 없음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만큼 별도 유급 처리

-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유급처리가 필요 없음
- 시급제 및 일급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감시단속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됨
-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제공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근기 01254-6550, 199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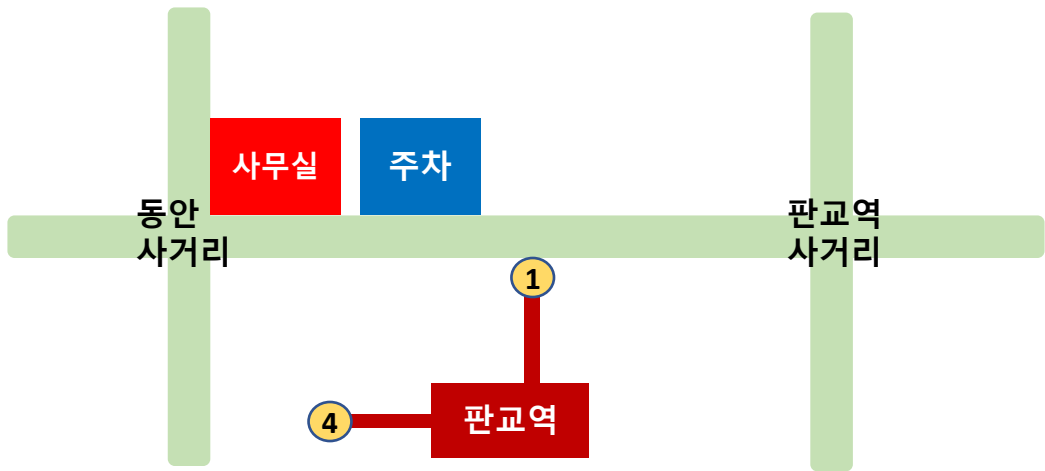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3.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829, 2014.02.19)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해야함 (근로시간 x 1.5)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산정방식	-	근로시간 *1.5배 시간으로 부여 8시간 초과근로분에 대해선 2배 시간으로 부여

Summary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부여
- 휴일 부여시 월급제는 별도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시급제 및 일급제는 별도 임금 지급하여야 함
-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안형근 공인노무사
cpla_ahg63@naver.com